

재해자 지원으로 본 일본의 지진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Disaster Support System for View Point Research about Japan Earthquake Insurance Problems

Shinwook Kang^{a,*} Namkwun Park^{b,1}

^a *Special Disaster Emergency Response R&D Center, Kyungil University, 50, Gamasil-gil, Gyeongsan-si, Gyeongsanbuk-do, Republic of Korea*

^b *Public Safety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15 Deoksugung-gil, Jung-gu, Seoul 100-739, Republic of Korea*

ABSTRACT

A victim of natural disaster support systems are self-help, cooperation and taxes and other public charges. This research purpose, a victim support system became the focus of cooperation(Earthquake Insurance,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ZENROSAI) that is base on strength of East-Japan Earthquake, is reviewing the supply present condition and limit of provide relief problems. research is using data that is base on many kinds of publications and homepages and hearing by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Insurance company.

KEYWORDS

Japan Earthquake Insurance
2011 Sendai Earthquake and Tsunami Deduction System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and Consumers Insurance
Cooperatives(ZENROSAI)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자 지원제도에는 크게 자조(自助)와 공조(共助) 그리고 공조(公助)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 지원 제도 중의 공조(共助)(지진보험, JA공제, 전노제)를 대상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급 현황과 함께 급부의 제약 등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간행물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답사, JA건경이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했다.

일본 지진보험
동일본 대지진
공제제도
JA건물 갱생 공제
전노노동자 공제 생활
협동조합연합회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3-600-4501. Fax. 82-53-600-4503.
Email. hck5238@hotmail.com

1 Tel. 82-2-3705-1124. Email. park9616@seoul.go.kr

ARTICLE HISTORY

Received Mar. 02, 2014

Revised Mar. 03, 2014

Accepted Jun. 31, 2014

1. 서론

한국과 비교하여 지진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은 과거부터 지진재난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 효고현남부지진 「阪神淡路大震災 : 兵庫縣南部地震」, 2004년 니가타현 추에즈 지진 「新潟縣中越地震」, 그리고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 : 동북지방의 태평양바다 지진 「東日本大震災 : 東北地方の太平洋沖地震」은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마그니튜드 9.0을 기록하였고, 거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진해일에 의하여 사망자 15,854명, 실종자 3,155명, 부상자 26,992명, 건물피해 419,457동(2012년 3월 11일 일본경찰청 보도자료)이라고 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피해를 남겼다. (National Police Agency Press release, 2012)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일본의 이재민 지원제도에에는 크게 자조(自助)제도와 공조(共助)제도, 공조(公助)제도가 있다. 「자조(自助)」는 개인레벨의 보험 등으로 지진보험과 같은 보험제도에 가입하여 주택에 대한 내진안전 등의 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조(共助)」는 지역단위에서 주택공제제도, 의연금 등 지역커뮤니티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며, 「공조(公助)」는 나라나 자치체의 레벨단위에서 거주안정지원금, 생활재건지원금 등의 공적인 지원을 뜻한다(Fig.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재난의 발생이 빈번한 일본을 대상으로 1966년에 창설된 지진 보험에 대하여 제도의 개요와 상품 내용의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이재민의 지원 제도안의 자조(自助)제도(지진 보험, JA공제, 전노제)중 지진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의 지진보험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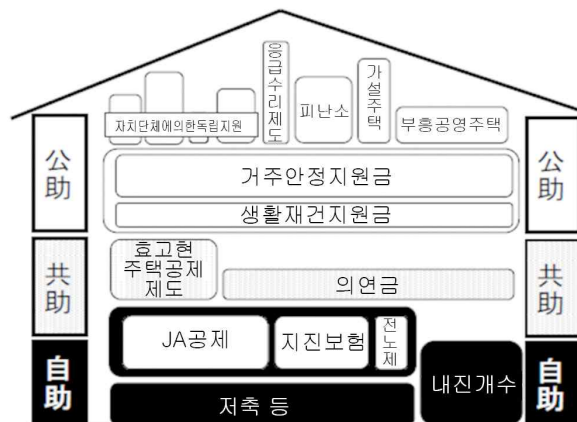


Fig. 1 Third Stage Frames for Disaster Housing Assistance

2. 지진보험

2.1 지진보험 제도의 개요와 현황(2012년 1월 기준)

일본의 지진보험 제도는 1964년 6월 16일에 발생한 니카타 지진 「新潟地震」(마그니튜드 7.5)을 계기로 지진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당시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재정부장관은 보험심의회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자문 및 회의를 통해 1966년 5월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진보험 제도는 현행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정적인 범위에서 시작 하였으나, 경제성장을 통한 여러 가지의 사회적 변화와 대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40여 년 간 수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지진보험은 거주용 건물이나 가재(家財)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점포종합보험 등)의 계약에 수반되는 형태이며, 지진보험을 제외한 화재보험만의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진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는 「지진보험계약확인란」에 계약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지진보험만을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다.

보상이 되는 손해(損害)는 지진(地震), 분화(噴火)등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화재(火災), 손괴(損壞), 매몰(埋沒), 유

실(流失)에 의해서 생긴 손해로 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전손, 반손, 일부손해가 되었을 경우이다. 또한 계약의 대상은 지진보험법에 의한 거주용 건물 또는 생활용 동산(가재)에 한정하고 있다(지진보험법 2조 2항 1호).

보험금액은 지진보험법에 의한 주계약(화재보험) 보험금액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도액은 거주용 건물은 5000만 엔, 생활용 동산(가재)은 1000만 엔으로 규정되어 있다.(지진보험법 2조 2항 4호)

지불 보험금(지급보험금)은 전손이 100%, 반손이 50%, 일부가 5%이내에서 지불되며 이는 시가 액 안에서 책정된다.(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1. Insurance Payments for Damages

| 보험의 대상 | 손해의 정도 | 보험금의 지불액수 |
|------------|--------|-------------------------------|
| 거주용 건물 | 전손 | 보험금액의 100%(단 시가액을 한도로 한다) |
| | 반손 | 보험금액의 50%(단 시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 | 일부손해 | 보험금액의 5%(단 시가액의 5%를 한도로 한다) |
| 생활용 동산(가재) | 전손 | 보험금액의 100%(단 시가액을 한도로 한다) |
| | 반손 | 보험금액의 50%(단 시가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
| | 일부손해 | 보험금액의 5%(단 시가액의 5%를 한도로 한다) |

Table 2. Recognized Standards of Earthquake Damage Insurance(Residential Buildings)

| 손해의 정도 | 주요구조부의손해액 | 소실, 유실한 바닥면적 | 1층 바닥까지 침수 등 |
|--------|-----------------|------------------|---|
| 전손 | 건물시가의50%이상 | 건물총건평의 70%이상 | |
| 반손 | 건물시가의 20%~50%미만 | 건물총건평의 20%~70%미만 | |
| 일부손해 | 건물시가의 3%~20%미만 | | 건물이 1층 바닥까지 침수 또는 지반면으로부터 45cm를 넘는 침수로 전손·반손에 이르지 않는 경우 |

Table 3. Recognized Standards of Earthquake Damage Insurance(Movable assets)

| 손해의정도 | 가구의 손해 인정기준 |
|-------|-----------------------------|
| 전손 | 가구시가의 80%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
| 반손 | 가구시가의 30%~80%의 손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
| 일부손해 | 가구시가의 10%~30%의 손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1회의 지진에 지불 한도액은 5조 5000억 엔으로 정해져 있으며(Fig 2), 총 지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불보험금액은 아래의 식(1)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된다.

지진보험료율의 계산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보험료율 산출 단체에 관한 법령(損害保險料率算出団体に關する法律)」에 근거하여 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가 산출하고 있다. 다음의 식(2)는 지진보험료율의 계산식을 나타낸다.

$$\text{지불보험금} = \text{지불되어야 할 보험금} \times \frac{5\text{조}5000\text{억엔}}{\text{지불되어야 할 보험금의 총액}} \quad (1)$$

$$\text{지진보험료율} = \text{기본료율} \times (1 - \text{할인율}) \quad (2)$$

지진보험의 기본료율은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로 되어있다. 「순보험료율」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보험금에 충당되는 것이며, 「부가보험료율」은 손해의 조사나 계약의 사무처리 등에 충당되는 「사비(회사의 비용)」,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 사무를 실시하는 대리점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리점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료율은 지진보험의 계약대상인 거주용 건물, 가구를 수용하는 거주용 건물의 구조, 소재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거주용 건물의 구조는 지진의 흔들림에 의한 손괴나 화재에 의한 소실 등의 위험을 감안하여 Table 4와같이 구분하고 있다.

건물이 소재하는 위치에 따라 지진에 대한 위험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전국을 1등지부터 4등지까지의 4개 등지로 분류하고 있다.(Table 5) 할인제도는 「건축년 할인」과 「내진등급 할인」, 「면진(免震)건축물 할인」, 「내진진단 할인」이 있으며, 건축년 또는 내진 성능에 의해 다음의 Table 6과 같이 10%~30%의 할인이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되지 않는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Structural

| 구조구분 | 기준 |
|------|--|
| A구조 | 내화건축물, 준내화건물및 소방령 준내화 건물등(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
| B구조 | 구조 이외의 건물(목조의 건물) |

Table 5. Division of District

| | |
|-----|--|
| 1등지 |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카고시마현 |
| 2등지 | 홋카이도현, 아오모리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 기후현, 시가현,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 |
| 3등지 |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오사카부, 카가와현, 에히메현 |
| 4등지 | 치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토쿠시마현, Kochin |

Table 6. Earthquake Insurance Discount System

| 할인제도 | 할인의 설명 | 보험료의 할인율 | |
|--|---|----------|-----|
| 건축년 할인 (계약 개시일이 2001년 10월 1일 이후) | 대상건물(수용되는 가구 포함)이 1981년 6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건물의 경우 | 10% | |
| 내진등급 할인 (계약개시일이 2001년 10월 1일 이후) | 대상 건물(수용되는 가구 포함)이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본 주택 성능 표시 기준에 정해진 내진 등급(구조 몸체의 도괴등 방지), 또는 국토 교통성이 정하는 「내진 진단에 의한 내진 등급(구조 몸체의 도괴 등 방지)의 평가지침」에 정해진 내진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내진등급1 | 10% |
| | | 내진등급2 | 20% |
| | | 내진등급3 | 30% |
| 면진(免震) 건축물 할인 (계약 개시일이 2007년 10월 1일 이후) | 대상 건물(수용되는 가구 포함)이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면진(免震) 건축물」인 경우 | 30% | |
| 내진 진단할인 (계약 개시일이 2007년 10월 1일 이후) | 내진 진단 또는 내진 개수에 의해 건축 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진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거주용 건물 및 수용되는 가구 | 10% | |

지진보험 제도는 정부가 손해보험 회사를 보조하는 「재(再)보험」 제도가 있다. 이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거액의 손해를 수반하는 지진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자금력만으로는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진보험 제도의 특징은 ① 거대 손해의 발생에 대비하고, 정부가 재(再)보험에 의해서 보험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자금의 앞선 또는 융통을 도모한다.(정부가 전면적으로 보조하는 국민일체의 시스템), ② 지진보험의 재(再)보험 전문회사(일본 지진 재(再)보험 주식회사)에 모든 계약을 위탁하여 민간의 위험 준비금을 일괄해 적립한다.(손해보험 업계 일체의 시스템), ③ 화재보험 가입 시 옵션으로써 자동 가입되어 중복으로 가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지진 등에 의한 이재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지진 등에 의해 파괴된 건물등의 복원이 아니라 재해후에 당면하는 생활을 위한 자금의 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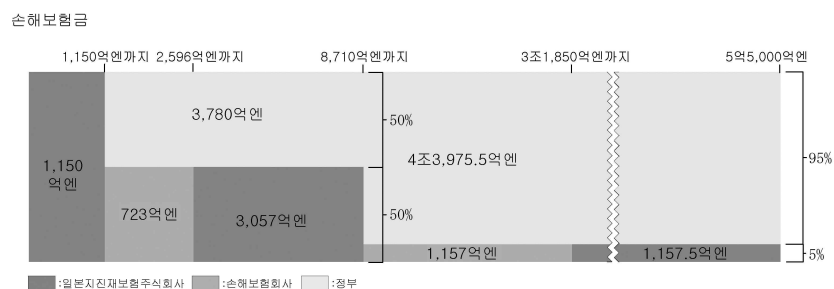


Fig. 2 Payment Plans by Damage Insurance

2.2 지진보험의 문제점

지진보험 제도는 1966년에 창설되어 약 40여 년 간의 수차례 개정을 했으나, 현재의 지진보험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등에 의하여 세대가입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도 기준, 23.7%로 아직도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Fig 3).

이러한 현상은 지진보험 제도에대한 낮은 인식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지진보험 제도는 피해주민들의 주택 재건(再建)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생활재건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③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는 전문가 및 조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가입자도 존재하고 있으며, 신속한 보상은 재난 피해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The Positioning And Problems of Earthquake Insurance System In Japan, 2005)

④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는 피해가 너무 커 여러 손해보험 회사에서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전까지와 제도는 동일하지만 손해보험회사에 따라서 입회의 타이밍이 늦거나, 대응 속도가 다르거나, 판정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⑤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에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구조부에 피해가 없으면 지진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도 문제점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 문제점은 과거 지진 재해에서도 이재민과의 많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아직 재검토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재 지진보험의 세대 가입률은 화재보험 부대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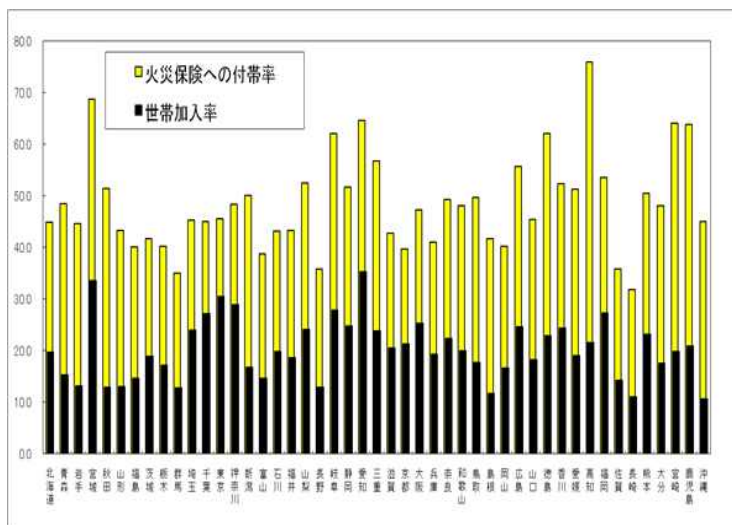


Fig. 3 Subscription Rate of Household Fire Insurance

2.3 손해보험 회사에 의한 지진 재해 보상

2.3.1 지진 화재 비용 보험금

지진 화재 비용 보험금(특약)은 일반적으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화재 보험에 자동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보험금(특약)의 하나이다. 지진 화재 보험금은 지진 혹은 분화 또는 이것들에 의한 해일을 원인으로 하는 화재로 보험의 대상이 건물인 경우 건물의 반소(半燒) 이상일 때, 보험의 대상이 가구인 경우, 가구를 수용하는 건물이 반소(半燒) 이상이 되었을 때, 또 가구가 전소(全燒) 때, 화재 보험금액수의 5%(1사고 1부지내 300만엔 한도)가 지불된다. 도과나 해일에 의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지진 등에 의한 화재가 원인인 경우만 보상된다.

2.3.2 생명 손해보험 일체형 보험상품에 의한 지진재해보상의 추가(초보험 : 超保險)

지진 보험의 보상은 화재보험의 보험금액수의 50%가 최고이며, 지진에 의해 건물이 전소했을 경우 보험금만으로 복구 작업을 실시할 수 없다. 초보험에서는 지진보험의 가입에 더하여 지진위험 등 추가 담보 특약을 플러스 하는 것으로서 최대 보상액을 100%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가구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화재 사고와 비슷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공제제도

3.1 JA공제의 건물갱생공제

JA공제란 원래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의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조합원이라도 각 지방의 JA마다 조합원의 20%까지는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또한 농업종사자가 아니어도 출자금을 지불하여 준조합원이 되어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JA공제는 비영리 조직으로 민간의 화재보험 회사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판매 원가도 저렴하며, 판매 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싼 보험료로 운영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갱생공제는 지진 등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50%를 보상하며(손해 비율이 5%이상 일때), 건물이 전손·전소가 아닌 경우는 손상 비율에 따라 공제금이 지불된다.

3.2 전노제의 자연재해 보상 첨부 화재 공제

전노제(전국 노동자 공제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 : 全国労働者共済生活協同組合連合会)는 소비 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에 의거하여 후생노동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협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제 활동은 1954년에 오사카에서 시작되었으며, 1957년 공제 사업을 개시하고 있던 전국 18 도도부현의 노동자 공제 생협이 「전국 노동자 공제 생활 협동조합 연합회(노제련)」를 결성해 1975년에 전국의 사업 통일을 실시함과 동시에 약칭을 전노제(全労済 : ZENOSAI)로 변경하였다.

자연재해 공제는 1995년 효고현 남부 지진 이후 국민의 지진재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져 가입자 사이에서 지진 재해에 대응하는 공제 상품의 요구가 있어 2000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자연재해 공제는 화재 공제의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해 공제만을 계약할 수 없다. 또한 지진 재해로 손해를 받았을 경우 자연재해 공제금이 지급되지만 화재 공제로부터도 지진 등 재해 위로금이 지불된다(Table 7).

Table 7. The Benevolent Fund for Natural Disasters by ZENOSAI(yen)

| 피해의 정도 | | 손해의 정도 | 대형 타입 | | 표준 타입 | |
|---------|-----------|--------------|---------|--------|---------|--------|
| | | | 1회당 공제금 | 지급 한도액 | 1회당 공제금 | 지급 한도액 |
| 손괴·소실 등 | 전손·전소 | 70%이상 | 30,000 | 1,800만 | 20,000 | 1,200만 |
| | 반손·반소 | 20%~70%미만 | 15,000 | 900만 | 10,000 | 600만 |
| | 일부파괴·일부파손 | 손해액 100만엔 초과 | 3,000 | 180만 | 2,000 | 120만 |

자연재해 공제는 지진 보험이나 건물 갱생 공제에 비해 납입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유로는 공제 제도가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재해 공제가 풍수해와 지진재해라고 하는 심플한 보상내용, 그리고 보상액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4월부터 새롭게 대형 타입이 도입 되었으며, 화재공제에서의 보상은 화재 등으로 인한 경우 최고 6000만엔(건물4000만엔+가구2000만엔), 풍수해 등으로 인한 경우 최고 300만엔의 보상이 지불된다. 자연재해 공제에서는 풍수해 등의 경우 표준타입 3000만엔, 대형타입 4200만엔, 지진 등의 경우 표준타입 1200만엔, 대형타입 1800만엔의 보상이 지급된다. 또한 화재공제에서 지진 등에 의한 손괴(전손)와 화재에 대해 각각 200만엔과 300만엔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단 위로금은 「지진 등 재해 위문금 규정」에 근거하며 지방공공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공제 및 전노제가 적용하는 적립금 중에서 지불되므로 적립금의 총액을 넘는 규모의 대재해의 경우는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일본의 지진보험과 각 공제의 비교

2011년 3월의 시점에서 자조제도(지진보험, JA공제의 건물갱생 공제, 전노제의 자연재해 공제)전체의 세대 가입률을 보면, 총세대수의 47.6%(지진보험 23.7, JA공제의 건물갱생공제 20.6%, 전노제의 자연재해 공제 3.3%)가 된다(General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 of Japan, 2010). 이것은 총세대의 약 1/2세대가 지진재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진보험 제도 가입률의 낮음이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보험이외의 자조제도가 지진보험 제도에서의 부족한 가입율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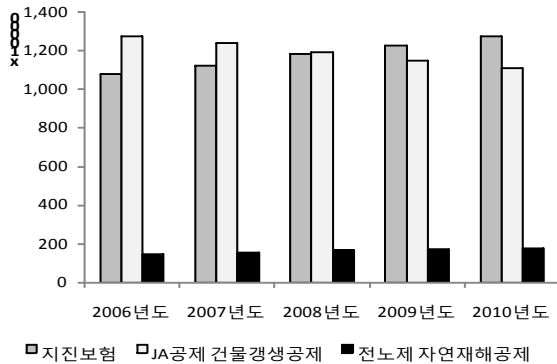


Fig. 4 Join Number of The Self-Help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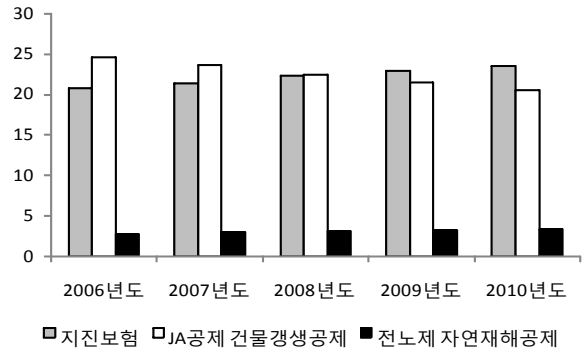


Fig. 5 The Household Percentage of The Self-Help System

Table 8. Comparison of Self-Help System at The Tim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 지진보험 | JA 건물갱생공제 | 전노제 자연재해공제/ 화재공제 |
|-------------|-------------|------------|------------------|
| 지급건수(건) | 741,169 | 530,656 | 270,515 |
| 지급액(만엔) | 119,804,011 | 76,990,000 | 10,789,301 |
| 한가구당지급액(만엔) | 161.6 | 145.0 | 39.8 |

(지진보험은 2001년 12월 28일, JA공제 건물갱생공제는 2011년 11월 28일, 전노제 자연재해 공제/화재공제는 2011년 11월 30일 기준)

Table 9.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and The Number of The Payment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Earthquake insurance&JA Deduction)

| | |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
|----------|------------|------------------|---------------|
| 지불건수 | 지진보험 | 65,427 | 741,169 |
| | JA공제건물갱생공제 | 100,000 | 530,656 |
| 지불액수(만엔) | 지진보험 | 7,834,600 | 119,804,011 |
| | JA공제건물갱생공제 | 11,880,000 | 76,990,000 |

(전노제의 자연재해 공제는 2000년에 창설되었으므로 지진보험과 JA공제건물갱생공제 두 개의 제도를 비교한다.)

그리고 가입률을 각각 보면 지진보험과 전노제의 자연재해 공제는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JA공제의 건물갱생공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Fig. 4).

2008년도를 기점으로서는 지진보험의 세대 가입률이 JA공제의 건물갱생공제의 세대 가입률 보다 높아지고 있다.(Fig. 5) 이로서 자조제도 안에서 가입률·규모의 측면에서 2번째인 지진보험 제도가 첫 번째가 된 것이다.

이것은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본 대지진 때 지불건수와 지불액 양쪽 모두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Table 8, Table 9)

4. 결론

현재의 지진보험 제도는 세대 가입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2011년도 기준 23.7%)것이 큰 문제가 된다. 각종 인터넷의 광고, 텔레비전의 CM, 책 등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조제도(지진보험 23.7%, JA공제의 건물갱생공제 20.6%, 전노제의 자연재해공제3.3%)의 세대 가입률을 보면 총세대수의 47.6%가 된다. 이것은 총세대의 1/2세대는 지진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이상의 세대는 지진재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General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 of Japan, 2010).

자조제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비싼 보험료에 비해 실제 보상금이 적은 이유와 보험금으로 주택재건은 가능하나 생활 재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손해 보험료를 산정 기구가 실시한 「지진 위험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15,000세대)에 의하면 약 30%의 사람들이 지진위험도에 따른 등지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하여 지금의 등지구분을 세분화 하여 불평등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새롭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서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실정(2011년 11월 30일 기준)이었으며, 각 손해보험 회사에 따라 재해 판정기준의 차이와 지급 속도가 다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향후 후속연구로서 한국의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지진보험에 대하여 비교 고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1단계인 일본의 지진보험에 관한 연구를 끝낸 상황이다. 2단계에서 한국의 관련 보험을 조사 연구하고, 3단계에서 두 나라의 지진보험에 관하여 비교 고찰을 계획·진행하고 있다.

References

-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Victims Life Reconstruction Assistance Law",
<http://www.bousai.go.jp/shiryuu/houritsu/008-1.html>
- DAIMON Fumio (2001), "Estim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of Earthquake Disasters at Earthquake Insurance",
 JOURNAL OF GEOGRAPHY, Vol.110, No.6, pp.971-979
- General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 of Japan (2011). "Non-Life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 of Japan",
<http://www.giroj.or.jp/disclosure/pdf/jibaiaramasi.pdf>
- General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 of Japan (2010). "Earthquake insurance in Japan", Vol.6,
http://www.giroj.or.jp/disclosure/q_ofjapan/index.html
- Hyogo Prefecture, <http://web.pref.hyogo.jp/wd34/phoenixkyosai.html>
- Japan Earthquake Reinsurance (2011), "Japan Earthquake Reinsurance Current Status in 2011",
http://www.nihonjishin.co.jp/disclosure/d01_con.html#2011
- JA Deduction, "Building rehabilitating Deduction", <http://www.ja-kyosai.or.jp/ebook/muteki/#page=1>
- Japan Earthquake Reinsurance, <http://www.nihonjishin.co.jp/top.html>
- National Police Agency Press release (2012), <http://www.npa.go.jp/archive/keibi/syouten/syouten281/pdf/ALL.pdf>
- NISHINO Hideki, ONISHI Kazuyoshi (2005), "The Positioning And Problems Of Earthquake Insurance System In Japan",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Vol.45, pp.417-420
- SAEKI Takuma, YAMAMOTO Koji, OGAWA Junko, TOYODA Toshihisa (1997). "Study on Economic Damage of Households by the Great Hanshin Earthquake : Part1 : The Outline of the Survey", pp.951-952
- SOMPO JAPAN INSURANCE INC, <http://www.sompo-japan.co.jp>
- TOKIO MARINE GROUP,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service/sogo/index.html>
- YAMAMOTO Koji, OGAWA Junko, SAEKI Takuma, TOYODA Toshihisa (1997). "Study on Economic Damage of Households by the Great Hanshin Earthquake : Part2 : Results of the Research", pp.953-954
- ZENROSAL, "Natural disaster guarantee additional Fire Deduction", <http://www.zenrosai.coop/kyousai/kasai/index.php>